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5683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일부 판결)]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이재철

변론 종결2018. 9. 6.

판결 선고2018. 10. 2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29,813,977원 및 그중,
가. 427,393,506원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나. 245,775,020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752,397,171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각 2017. 11. 2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478,5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7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D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에 피고 A(C의 대표이사였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08. 8. 14.	4억 원	D은행	3억 4,000만 원(2억 7,200만 원)	2009. 8. 14.(2017. 8. 4.)
2	2009. 9. 11.	5억 원	중소기업은행	4억 7,500만 원(4억 2,500만 원)	2010. 9. 10.(2017. 8. 4.)
3	2016. 4. 29.	2억 5,000만 원	한국산업은행	2억 3,750만 원	2017. 4. 28.(2017. 6. 29.)
4	2016. 4. 29.	6억 원	한국산업은행	5억 1,000만 원	2017. 4. 28.(2017. 6. 29.)

나. 원고는 2017. 8. 8. D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7. 7.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연체를 이유로, 2017. 6. 30.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C에 대한 보증사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8. 25. D은행에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45,775,020원을, 2017. 8. 1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427,393,506원을, 2017. 8. 29. 한국산업은행에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39,027,678원 및 이 사건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13,369,49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합계 1,425,565,697원).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은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53,360원이고,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30,540원이며,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780,820원이고, 이 사건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760,540원이다(합계 3,025,260원).

라.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223,02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7. 8. 16.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7. 1. 2. 피고 B(피고 A의 처이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7. 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1,429,813,977원(= 각 대위변제금 합계 1,425,565,697원 + 각 추가보증료 합계 3,025,260원 + 법적절차비용 1,223,020원) 및 그중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427,393,50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16.부터,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45,775,02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25.부터, 이 사건 ③,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752,397,171원(= 239,027,678원 + 513,369,49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29.부터 각 피고 A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11.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A가 2016. 6. 13. E에게 C의 경영권과 그 발행 주식 35%를 양도하고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A에서 피고 F로 변경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6. 9.경 피고 A와 F의 기술등급을 평가하여 연대보증인을 F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A와 F의 기술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을 F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6. 6. 13. E에게 C의 경영권과 그 발생 주식 35%를 양도하고, 그 무렵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A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 2.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8. 8. 14., 2009. 9. 11. 및 2016. 4. 29. 이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C가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미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C의 전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A로서는 위 구상금채무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2017. 8. 16.부터 2017. 8.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9,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8. 1. 2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 2. 무렵 피고 A는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제12층 H호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 A가 부담하고 있는 은행채무,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위 적극재산을 넘어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C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표이사를 사임할 2016. 6. 무렵에는 C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위 은행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은 후임 대표이사의 횡령 등에 기한 것으로 피고 A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 A가 C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표이사를 사임할 2016. 6. 무렵 C는 은행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5. 26. 피고 A가 작성·제출한 부가가치세 징세유예 신청서에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846,520원에 대하여 '사업상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경색'을 이유로 '2016. 5. 31.부터 2016. 12. 31.까지(7개월)' 징수유예(채납처분유예)를 신청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9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5. 27.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D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6. 2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I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피고들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그 매도가액인 5억 8,000만 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143만 원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액인 4억 7,857만 원(= 5억 8,000만 원 - 1억 143만 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억 7,85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억 7,8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지나

판사김근홍

별지